

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
(임종성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97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9. 1.

발의자 : 임종성 · 이찬열 · 이원욱

김철민 · 김병욱 · 김성수

박정 · 박주민 · 송석준

이인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(2006~2020년)을 고시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동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5년 주기로 평가·보완하고 있음.

그러나, 동 계획이 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주요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수도권 인구, 산업, 성장 등 경쟁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를 통해 계획의 목표를 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충분한 평가와 보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절차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의 평가나 보완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4항 신설).

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5년마다 평가하고 보완하여 그 결과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,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도권정비계획의 평가 및 보완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고시 후 5년이 경과한 수도권정비계획의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) ① ~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4조(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5년마다 평가하고 보완하여 그 결과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,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